

# 새로운 COVID-19 휴가



- DC 가족 의료 휴가법(DC Family and Medical Leave Act, DCFMLA)에 따른  
임시 "새로운 COVID-19 휴가" 직장 포스터 - 2022년 1월 14일 업데이트

본 COVID-19 휴가 안내문은 컬럼비아 특별구 소재의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의 고용주에게 적용됩니다.

발효 일시: 2021년 11월 5일

## 내용

- 2021년 11월 5일부터,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30일 동안 근무한 직원은 다음 이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16주의 새로운 COVID-19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(DC Code § 32-502.01, 2021년 11월 18일 버전 승인).
  - 확진 판정** - 직원이 COVID-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보건부(Department of Health) 가이드라인에 따라 격리를 해야 하는 COVID-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족이나 동거하는 가구 구성원을 돌봐야 하는 경우
  - 예방격리 또는 격리** - 직원 또는 직원의 가구 구성원이 COVID-19에 따른 중증 질환 고위험군 등의 이유로 예방격리 또는 격리에 대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권고를 받았거나 고용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경우
  - 가족 구성원 돌봄** - 보건부 지침,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권고, 가족 또는 개인의 학교/보육 시설 명령 또는 방침에 따라 직원이 예방격리 또는 격리 중인 가족 구성원 또는 동거하는 개인을 돌봐야 하는 경우
  - 보육 시설 등의 휴업** - COVID-19으로 인해 학교 또는 보육 시설이 휴업하고 있거나 이용할 수 없어서 직원이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
- 증명서** -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요구 조건에 관한 합리적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- 날짜가 기입된 검사 결과
  -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한 진술서
  - 준수 필요성을 입증하는 보건부 지침 및 문서 사본
  - 보육 시설 방침 사본 또는 시설에서 작성한 서면 진술서
- 사전 통지** - 직원은 가능하다면 사전 통지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휴가 필요성이 생긴 후 최대한 신속히 통지해야 합니다.
- 무급 휴가** - 새로운 COVID-19 휴가는 무급이지만 직원은 16주 권리에 합산되는 미사용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처벌** - COVID-19 휴가 조항을 위반하면 위반 건당 \$1,000의 벌금과 DC Code § 32-509에 명시되어 있는 손해 배상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발효 일시** - 새로운 COVID-19 휴가는 2021년 11월 5일부터 발효됩니다.

(다음 페이지에서 계속)

## 고용주 게시 요구사항

---

특별구에서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고용주는 새로운 COVID-19 휴가 안내문을 눈에 띄는 장소에 게시하고 유지해야 합니다. 고의로 게시하지 않은 고용주는 게시하지 않은 일수마다 \$100달러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.

## 자주 하는 질문(FAQ)

---

인권 사무국(Office of Human Rights, OHR)은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새로운 COVID-19 휴가 조항에 대한 해석 지침을 발행했으며 [ohr.dc.gov/page/OHRGuidance](https://ohr.dc.gov/page/OHRGuidance)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### 위반에 대한 고발

고용주가 본 법령에 따른 "새로운 COVID-19 휴가", 가족 휴가, 의료 휴가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회사로부터 보복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사건 발생 후 1년 이내에 OHR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진정을 제기하려면 [ohr.dc.gov](https://ohr.dc.gov)로 방문하십시오. OHR의 절차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(202) 727-4559번을 통해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